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연금 도입과 과제

: 독일 뢰룹연금을 중심으로

김동겸 선임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이들의 빈곤율은 일반근로자의 3배 이상인 상황에서, 자영업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독일에서 운영 중인 뢰룹연금 사례를 참조할 만함. 2005년 독일에서 도입된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인 뢰룹연금은 세제 혜택을 통한 가입유인 제고, 종신행태의 급여수령 방식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독일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인 뢰룹연금(Rürup-Rente)을 20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뢰룹연금은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일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한 형태로, 뢰룹위원회¹⁾의 위원장이었던 뢰룹(Bert Rürup)에 의해 제도화 됨.
 - 소득의 변동성이 커 노후생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자영업자를 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특화형(맞춤형) 연금의 성격을 지님.
- 계약 건수 기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2005~2015년) 연평균 29.6% 성장하였으며, 2015년 기준 보유보험료는 33억 유로에 달함(〈그림 1〉 참조).

■ 뢰룹연금의 도입배경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형평성 및 필요성 증대, 공적연금 개혁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대책 정비,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선별적 복지제도²⁾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일부 자영업자에 한해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자³⁾

1) 뢰룹위원회(Rürup-Kommission)는 슈뢰더(Schröder) 정부가 20002년에 설치하였으며, 뢰룹위원회의 정식명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속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위원회(Kommission für die Nachhaltigkeit in der Finanzierung der Sozialen Sicherungssysteme)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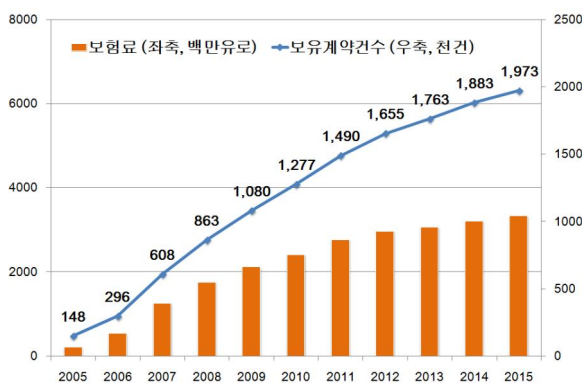
2) 선별적 복지(selective social service)는 대상을 선별하여 필요한 계층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보편적(universal) 복지와 대별됨.

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법정연금에서 배제된 자영업자는 노후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어옴.

– 자영업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공적연금 가입이 배제되어 노후소득보장의 형평성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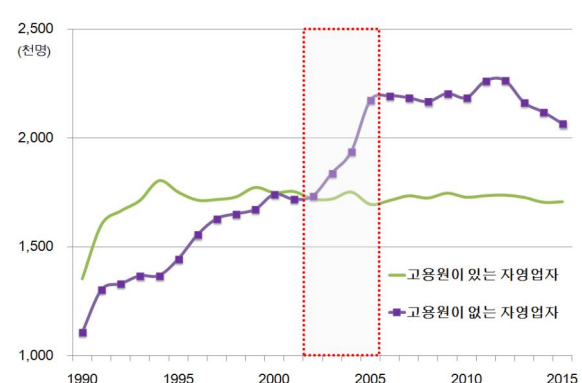
- 둘째, 2001년 연금개혁⁴⁾ 이후 공적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리스터연금⁵⁾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음.⁶⁾
- 셋째,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2002년 이후 독일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었음(<그림 2> 참조).

〈그림 1〉 뮌헨연금 시장 규모



자료: GDV(2016).

〈그림 2〉 독일의 자영업자 수 추이



자료: Euro Stat.

■ 뮌헨연금은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에서 배제되어 있는 자영업자를 주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되어 온 사적연금과는 대별됨.⁷⁾

- 뮌헨연금의 주 가입대상은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자에서 배제된 자영업자로,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의해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자들은 제외함.
- 뮌헨연금은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입 이후에는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3) 16~65세 미만의 자영업자 중 조산사, 해상안내원, 예술가, 언론·출판인, 가내수공업자, 어업종사자, 상공인 등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당연가입자로 지정하여 법정연금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음.

4)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위주의 노후소득보장에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로 전환됨.

5)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은 정부 인증형 개인연금으로, 근로자, 수공업자·예술가 등 영세자영업자, 공적연금 가입 농민 등 공적연금 당연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6) 연금개혁으로 인한 급여 하락 방지를 위해 리스터연금을 도입함으로써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한 소득대체율(평균소득자 45년 가입기준)이 2030년까지 67%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급여보장규정을 도입함.

7) 한편, 2002년에 도입된 리스터연금의 경우 저소득 임금근로자를 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공업자 및 예술가 등 법정연금의 당연가입자로 지정되어 동 제도에 가입 중인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도 리스터연금에 가입이 가능함.

■ 또한, 정부의 세제 혜택을 통해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신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함.

- 납입된 보험료는 2005년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지원의 상한액은 미혼자는 2만 유로, 기혼자의 경우 4만 유로로 설정되어 있음.
 - 뒤류연금의 보험료 납입액 대비 세제 혜택 비율은 2005년 60%에서 2025년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함(〈표 1〉 참조).⁸⁾
- 세제적격 연금으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만 60세 이후 매월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것으로 약정해야 함.

〈표 1〉 뒤류연금의 세제 혜택

구분	2005	...	2013	...	2020	...	2025	...	2040
보험료납입(소득공제)	60%	...	76%	...	90%	...	100%	-	-
연금수령(과세이연)	50%	...	60%	...	80%	...	85%	...	100%

자료: Better Finance(2015); Bundesfinanzministerium.

■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연금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노후소득빈곤 위험이 큰 상황이므로, 사적안전망 제고 차원에서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 도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에 이르고,⁹⁾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12.9%)은 상용근로자(4.1%)보다 세 배 이상 높음.¹⁰⁾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가입자 중 실질적인 납부자 비중이 2015년 기준 17.6%에 그치고 있어,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특히, 공·사 연금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상용근로자가 4.4%인데 반해, 자영업자는 49.3%로 연금사각지대에 노출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음.¹¹⁾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노후빈곤위험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연금 도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함. **kiri**

8) 한편, 연금수령단계에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감으로써 2040년에는 수급액 전액에 대해 적용하기로 함.

9)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6.6%), 독일(11.2%), 일본(11.5%) 등과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음(OECD 2015).

10) 통계청(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11) 한국복지패널조사 10차 자료.